# 교원인사규정

제 정 1995. 3. 개 정 1999. 9. 개 정 2002. 3. 개 정 2004. 9. 개 정 2006. 3. 개 정 2007. 9. 개 정 2009. 3. 개 정 2010. 1. 전면개정 2011. 1. 개 정 2011. 10. 정 2012. 7. 개 개 정 2013. 6. 개 정 2014. 3. 2014. 8. 개 정 개 정 2016. 5. 개 정 2018. 10. 개 정 2019. 8. 개 정 2020. 9.

### 제 1 장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2.7.22.)

제2조 (정의 등) ①이 규정에서 "교원"이라 함은 「학교법인우송학원 정관」제39조제3항에서 정한 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 말하며(이하 "전임교원"이라 한다.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포함한다), 본 대학의 전임 교원은 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비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"비정년트랙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.(개정2011.10.1.)(개정 2019.8.21.)

②전임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(개정2012.7.22.)

③강사는 학생을 교육·지도하는 강의전담강사를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문 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및 계약기간, 임금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2019.8.21.)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전임교원 및 강사 외에 연구교원.명예교수.대우전임교원.초빙교수·특임교수.겸임 교수.석좌교수.객원교수·산학협력중점초빙교원등(이하"비전임교원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(개정2011.10.1.) (개정2019.8.21.)

⑤비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은 학칙에서 정하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이 규정에서 "임면"이라 함은 임용, 승급, 보직, 휴직, 복직, 직위해제 및 면직을 말한다.

⑦이 규정에서 "임용"이라 함은 신규임용, 승진임용, 재임용을 말한다.

- ⑧이 규정에서 "장려교원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1. 매년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연구 및 창작활동、교육 및 학생지도、산학협력 및 봉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"25점 미만(원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. 이하 본 조항에서는 같다)"로 평가 받은 교원. 이 경우 각 영역별 평가에서 1개의 평가요소 만으로 "25점 이상"을 획득한 경우 이는"25점 미만"으로 본다.
- 2. 매년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연구 및 창작활동、교육 및 학생지도、산학협력 및 봉사 부문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서 "25점 미만"으로 평가 받은 교원(각 영역별 평가에서 1개의 평가요소 만으로 "25점 이상"을 획득한 경우 이는 "25점 미만"으로 본다)으로서 역량평가 영역 중 교원역량 부문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의 합이 25점 미만인 교원.
- 3. 매년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연구 및 창작활동、교육 및 학생지도、산학협력 및 봉사 부문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서 "0점 이하"로 평가 받은 교원
- 4. 매년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역량평가 부문에서 20점 미만인 교원
- 5.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(신설2011.10.1.)
- 6. 학생의 교육, 지도 및 학과 발전 등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교원으로서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려교원으로 지정된 교원(신설2014.8.25)
- 제3조 (적용범위) ①이 규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.
  - ②비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의 특임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③외국인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"외국인교원 인사규정"을 적용한다.(개정2009.3.1.)
  - ④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하여는 "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"을 적용한다.(개정2011.10.1.)
  - ⑤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4조 (임면절차) ①교원의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-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우송학원(이하 "본 학원"이라 한다)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- 제5조 (계약제 임용기간) ①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교수: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보장
  - 2. 부교수: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  - 3. 조교수: 2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  - 4. (삭제 2012.07.22.)
  - 5. 승진임용자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.(2014.04.01.신설)
  - ②전임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 임용할 수 있다.
- 제5조의 2 (계약제 전임교원의 계약내용) ①계약제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하다.
  - 1. 소속 및 직급
  - 2. 근무기간
  - 3. 급여
  - 4. 직무
  - 5. 업적평가
  - 6. 복무

- 7.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
- 8. 계약의 해지
- 9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,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6조 (교원의 자격)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과 경력 등을 갖춘 자로서 연구 실적 및 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격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.
- 제7조 (겸직금지) ①전임교원은 본 대학 외에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.

다만,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

- 1. 법령에 의한 겸직의 경우
- 2.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
- 3.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
- 4.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
- ②총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.
- 제7조의2 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) ①전임교원은 학생의 교육.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상업.공업.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)를 겸직할 수 있다.
  - ②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  - 1. 허가의 필요성
  - 2. 허가기간의 적절성
  - 3.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
  - 4.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.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의 3 (인사발령의 효력 등) ①본 대학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- ②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- ③교원의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임용하지 아니한다.
- 제8조 (교원업적평가)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본 대학의 「교원업적 평가규정」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 2 장 연구실적물

- **제9조 (연구실적물의 인정 범위)** ①저서는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어야 한다.
  - ②논문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,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.
  - 1. SCI급 학술지(이공계-SCI, SCIE, 사회과학-SSCI, 인문-A&HCI, 예술-SCOPUS 등)에 게재한 논문. 이 경우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한다.
  - 2. SCI급을 제외한 국제발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

- 3.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
- 4. 국내발간 학술지(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학술지를 제외한 학술지)에 게재한 논문
- 5.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 간행물(일간지 및 대학신문은 제외한다)에 게 재한 논문
- ③예·체능계는 연구, 발표, 전시, 입선 등을 포함하며, 그 인정범위는 【별표 1】과 같다. 이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,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 및 관계증빙서류(사진·발표작품·팜플렛·녹음테이프·악보 등)가 있어야 한다.
- ④학위논문은 발표기간에 제한 없이 1회에 한하여 교원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의 직급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.
- ⑤박사학위논문의 심사를 통과하고 임용일 이전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하여 "학위취득예정증명서"를 첨부 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한다.

#### 제10조 (연구실적물의 개인별 환산)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인정한다.

- 1. 제9조 제2항 제1호의 1인 단독연구 : 200%
- 2. 제1호 이외의 1인 단독연구: 100%
- 3. 제9조 제2항 제1호의 2인 이상의 공동연구
  - : 연구책임자는 [1÷(n+2)]×4로, 연구참여자는 [1÷(n+2)]×2로 환산
- 4. 제3호 이외의 2인 이상의 공동연구
  - : 연구책임자는 [1÷(n+2)]×2로, 연구참여자는 [1÷(n+2)]×1로 환산
- 5. 석사학위논문: 100%
- 6. 박사학위논문: 200%
- 7. 예.체능계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기준은 【별표1】에 의한다.

#### 제11조 (연구실적물의 심사) ①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- ②연구실적물의 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에 재직중인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의 교원(그중 1인 이상은 타 대학 교원)에게 위촉한다.
- ③연구실적물 심사 평점은 각 실적물 별로 심사자 전원이 "우"이상이어야 한다.
- ④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학위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.

#### 제 3 장 신규임용

#### 제12조 (신규채용) ①신임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.

- ② 전임교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, 인원, 지원 자격,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, 접수된 응모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.
- ③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,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.
-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1. 본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한 후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
- 2. 특수 분야의 전공자 및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
- 3. 해당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

- 4. 해당 전공의 특성화 또는 본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.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
- 6. 기타 해당 학과의 긴급한 사정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3조 (신규채용 전임교원의 자격) ①신규채용 전임교원(이하 "신임교원"이라 한다)은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  - ②연구실적의 환산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4조 (계약제 임용) ①신임교원은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.
  - ②신임교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15조 (신규임용 시기)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.
- 제16조 (신규임용 절차 및 기준)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절차 및 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- 제17조 (재 공모 및 보류) 응모자의 수가 전공 분야별로 매우 적거나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공모 공고를 하거나 채용을 보류할 수 있다.
- 제18조 (임용후보자 선정) ①총장은 신규임용 심사결과 임용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②임용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도의 심사를 위촉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.
- 제19조 (신규임용 제청) 총장은 신규 임용 대상자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원 이사장에 게 임용을 제청한다.
- 제20조 (신분보장) ①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.
  - ②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, 징계처분, 또는 본 학원 정관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
  - ③신임교원은 임용기간중이라도 임용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해태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임용계약이 해지된다.
- **제21조 (신임교원의 재계약 조건)** ①신임교원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본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평가결과가 매년 각 영역별로 60점 이상 총점 1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  - ②전항의 규정과 별도로 신임교원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학장이 부여한 업무 및 연구실적을 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9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1편을 200%로, 동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1편을 100%로 환산한다.
  - ③산학협력 등 특별한 임무를 목적으로 신규로 임용된 신임교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1조의2(신임교원의 조건부 재계약 및 계약해지) ①신임교원이 제2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봉조정(감액), 계약기간 단축, 특정한 임무부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②신임교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건부 재계약 기간 내에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을 아니 할 수 있다.
  -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계약을 체결한 신임교원이 기간 중에 직무를 해태하여 조건부 계약내

- 용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신임교원이 본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장려교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을 아니 할 수 있다.
- 제22조 (휴직, 복직, 징계) 신임교원의 임용기간 중의 휴직, 복직,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학원 정관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.
- 제23조 (직호 및 보수) ①신임교원의 직호는 교육경력, 연구실적,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. ②신임교원의 보수는 상호 협의하여 연봉으로 정한다.
- 제24조 (퇴직금) 신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.
- 제25조 (강의 및 학생지도) ①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총장이 정하는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.
  - ②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학생 지도교수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#### 제 4 장 승진임용

- 제26조 (승진임용 시기)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.
- 제27조 (승진 소요기간) ①전임교원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은 본 대학에 근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 되어야 한다.(개정2012.7.22.)
  - 1. 이 규정 개정일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: 7년
  - 2. 이 규정 개정일 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: 4년
  - 3. 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임용되는 조교수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: 6년
  - 4. 부교수에서 교수 : 5년
  - ②본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결과 "S등급"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은 전항의 승진 소요기간에서 해당 근무기간을 감한다.
  - ③본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"D등급"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은 제1항의 승진 소요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- ④휴직기간.직위해제기간.징계처분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28조 (승진임용 조건충족 등) ①승진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으로 한다.
  - 1. 제27조에서 정한 승진 소요기간을 충족한 전임교원
  - 2. 이 규정 개정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"B등급"이상을 5회 이상, 이 규정 개정 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"B등급"이상을 3회 이상, 이 규정 개정 이후에 신규로 조교수로 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 자는 "B등급"이상을 5회 이상,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"B등급"을 4회 이상을 획득한 교원. 이 경우 "D등급"과 "S등급"은 그 횟수에 따라 각각 가감한다.(개정2012.7.22.)
  - 3. 이 규정 개정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이 500%, 이 규정 개정 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이 300%, 이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이 500%,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이 400% 이상인 교원(2012.7.22.)
  - 4. 제3호의 정한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.
  - 5. 연구실적물의 환산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.
  - ②직위별 정원 등은 대학의 실정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

정원 내에서도 연령과 교원업적 및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에서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정할 수 있다.

③장기간 연수중이거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원은 해당 기간 동안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 ④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8조의2 (특별승진)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승진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.(개정2016.5.30.)

제29조 (승진임용의 제한)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할 수 없다.

정직의 경우: 18월
감봉의 경우: 12월
견책의 경우: 6월

#### 제 5 장 재계약 임용

제30조 (재계약 시기) 전임교원의 재계약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제31조 (재계약 대상 전임교원) 제5조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재계약 대상자로 한다.

제32조 (재계약 등) ①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계약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업적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보수 또는 연봉을 조정(감액)하거나 계약기간 단축 또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- 1. 전임교원이 계약근무기간 중 교원업적 평가결과 장려교원에 해당된 경우
- 2. 전임교원이 계약 임용기간 기간 중 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실적물이 연평균 50% 미만인 경우

③전임교원이 연속 2회 이상 또는 통산 3회 이상 장려교원에 해당한 경우 재계약임용을 아니 할 수 있다. ④계약기간중인 전임교원이 연속 2회 이상 또는 통상 3회 이상 장려교원에 해당한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⑤제2조제7항 제6목에 해당하는 장려교원은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(신설2014.8.25)

⑥재계약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(개정2014.8.25.)

⑦장기간 해외연수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전임교원도 이전의 업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(개정2014.8.25.)

### 제 6 장 정년보장

- 제33조 (정년보장 교원임용) 본 대학에서 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후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회 이상 "S등급"인 경우 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제33조의2(정년보장 교원임용) 정년보장 교원 임용 대상자는 [별지 제1호]에 의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결과 그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여야 한다. 단,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(신설2013.6.1.)
- 제33조의3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 ①정년보장 대상 교원을 심사평정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본조에서는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(신설2013.6.1.)
  - ②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(2013.6.1.)
  -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평가는 [별지 제1호]의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한다.

⑤위원회의 운영은 전략기획처에서 관장한다.(신설2013.6.1.)(개정2018.10.08.)(개정2020.09.10.)

제34조 (정년보장 교원의 의무) ①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2년 마다 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학술지에 등재한 연구 실적이 100%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실적의 환산은 제28조제1항 제5호에 의한다.

②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매년 교원업적 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"C등급"이상을 유지하여 야 한다.

제35조 (정년보장 교원의 조건부 계약체결 등) ①정년보장으로 임용된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"D등급"에 해당된 경우 특별한 임무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.

②정년보장으로 임용된 교원이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"D등급"에 3회 이상 해당되는 경우차기 연도에 정년보장 교원에서 그 임용을 해지하고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한다.

#### 제 7 장 교원업적평가 결과의 활용

제36조 (교원업적평가 결과의 상계)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"S등급"인 교원은 "D등급"의 평가 결과와 상계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"S등급"은 제33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실적에서 제외한다.

제37조 (성과금 지급) ①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등급별 지급 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상과상여금의 각 등급별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"S등급"과 "A등급"의 합 : 15%내외

2. "B등급": 35% 내외 3. "C등급": 35%내외 4. "D등급": 15%내외

③성과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당해 연도 예산 사정과 전체 전임교원의 목표달성도 등이 본 대학의 위상 제고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38조 (연구년 제) 연구년 교원의 선정 기준과 연구년제 기간 중인 교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## 제 8 장 보직 등

제39조 (보직) ①보직이라 함은 부총장, 처장, 교양교육원장, 국제교류원장, 대외협력원장, 산학협력단장, 학부(과)장 및 부속시설 등의 장을 말한다.

②부총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, 그 외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.

제40조 (휴직 및 복직) 전임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1조 (직위해제 및 해임) 전임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2조 (면직) ①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.

- 1. 사망한 때
- 2.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
- 3. 신규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계약 되지 못하였을 때
- 4. 재계약 대상교원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때

②전임교원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제43조 (호봉 및 보수) 전임교원의 호봉 및 보수 또는 연봉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과 본 대학 교직원보수규정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4조 (정년) ①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

②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45조 (신분보장) 전임교원은 사립학교법, 교육공무원법,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에 의거 신분을 보장받는다.

제46조 (복무) 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.국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7조 (포상) 전임교원의 포상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48조 (징계) 전임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9조 (적용) 교원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이나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(특례 규정) 제2조제7항의 "20점"은 2010년도 분까지의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하고 2011년도 분부터 의 교원업적평가에서는 이를 "25점"으로 한다.

제4조 (경과조치)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S등급, A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2회, 1회를 B등급으로 가산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제2조제7항 제3호, 제4호의 규정은 2014년도 평가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개정규정 제33조의2항 및 제33조의 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1】

# 예체능계열 실기분야 연구업적 인정 기준

분야별	연구(실기) 실적	인정비율
·	① 국제전, 미술대전, 상공전	
	- 입선 1회	50%
미 술	- 특선이상 1회	100%
	②지역규모 공모전	
	- 입선 1회	25%
	- 특선이상 1회	50%
	③ 공인된 개인전	
	- 개인전 1회	100%
	- 2인전 1회	50%
	- 기획전 1회	50%
	④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	
	- 입선 1회	25%
	- 특선이상 1회	50%
	⑤ 공인된 국제 초대전 출품 1회	70%
	⑥ 공인된 국내 초대전 출품 1회	46.6%
	⑦심사위원(신규 채용 대상 교원에 한하여 적용함)	
	- 국제전 심사위원 1회	50%
	- 미술대전,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	100%
	-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	50%
	- 시·도 단위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회	25%
문 학	① 문예단행본 출판	100%
	② 문예지 게재	
	- 문예지 게재(소설, 희곡)	33.3%
	- 문예지 게재(시, 수필, 평론)	20%
음 악	①국내·외에서 인정된 독창회, 독주회, 개인작곡 발표회 1회	100%
	② 국내·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	70%
	③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 이상, 3중주 이상, 단독음악회 및 3인이상 작품	50%
	발표회 및 반주 1회	
	④ 인정된 종합 연주회 등	
	-중주 및 반주 1회	33.3%
	-협주곡 협연, 오페라 주역 1회	100%
체 육	①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1회	100%
	② 올림픽 경기 출전	100%
	③ 전국대회 입상 1회	50%
	④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	100%
	⑤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	100%
창작실기 활동	①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	100%
	②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1회	50% 200%
학·예술관계 분야의 훈장 1회		

(별지 제1호 )

#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표

	소속:	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				
피평정자	직 급 :	성 명 : (인)			1)	
	성 명 :				.)	
구 문 가 평 영	평 정 요 목	평정기준				
		A (20)	B (15)	C (10)	D (5)	E (0)
1.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(20)	가.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사명감 나. 연구업적의 우수성 및 지속적인 학문적 성취 가능성 다. 건강상태(연령 참작)	(20)	(15)	(10)	(5)	( 0 )
2.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(20)	가.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·자세 나.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다.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	(20)	(15)	(10)	(5)	( 0 )
3. 대학발전 기여도 (20)	가. 보직 수행 등 대학·학과발전 기여도 나. '가'항목의 지속 가능성 다.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사업 수주 및 추진에 참여한 실적	(20)	(15)	(10)	(5)	( 0 )
4. 근무생활 및 청렴도 (20)	가. 근무자세 나. 타 업무종사 관계 다. 개인생활의 청렴도 라. 규정준수 여부	(20)	(15)	(10)	(5)	( 0 )
5. 기타 사항 (20)	가. 학내·학과 간 인화관계 나. 적극성 및 책임감 다. 구성원간 업무협조 및 신뢰감 라. 업무추진력 및 리더십	(20)	(15)	(10)	(5)	( 0 )
	소 계	( )	( )	( )	( )	( )
합 계 ( 100점 )		( ) 점				

※ 평정방법 : 평정자는 평정요목을 종합하여 평가영역별 평정란 20점~0점 중 택일하여 표기